

## 「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출이유

- 2026년도 구미시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- 출연 예정금액 : 39,231천원(시비 100%)
- 출연필요성  
「지방세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
- 법적근거  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
※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‘25년 말 개정예정으로 2026년 출연비율 인하 (1만분의 1.2 → 1만분의 1.0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### 1) 출연 동의요구서

주관부서	세정과
------	-----

기관명	한국지방세연구원					
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현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</li> <li>- 주요사업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</li> <li>·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				
출연 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39,231천원(시비 39,231천원)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					
	구분	2025년도 출연금	2026년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
		연구원 요구액	부서 산정액	증 감		
	출연금 (시비 100%)	57,152	39,231	39,231	-	감17,921
출연 필요성	○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					
근거· 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· 운영)</li> <li>○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· 운용)</li> <li>○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</li> </ul>					
지도감독 부서의견 (총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정기 간행물 발간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,</li> <li>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,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</li> <li>○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</li> </ul>					

## 2) 출연 기관현황(한국지방세연구원)

설립근거	법 률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					전화번호 : 02-2071-2748		
						홈페이지 : www.kilf.re.kr		
주요연혁	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,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	출연		
인원현황 (2025년 8월 현원기준)	○ 정원 78명 / 현원 64명 * 육아휴직 7명 포함							
	구 분	계	원 장	연구직	관리직	전문직	사무직 등	
	정 원	78명	1명	50명	2명	4명	21명	
	현 원	64명	1명	34명	2명	4명	23명	
	총인원	98명 정원외 인원 34명 (파견공무원12, 위촉연구원13, 위촉전문원3, 행정원4, 청사관리원2)						
※ 연구직(34명) : 연구위원직 18명, 연구원직 8명, 조사분석직 8명								
임 원 (2025년 8월 현원기준)	직 책 (직책명)	성 명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	비 고		
	이 사 장	정 종 섭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		2024.2.2. ~ 2027.2.1.		
	부이사장	김 하 수	경상북도 청도군수			2025.3.13. ~ 2026.3.12.		
	이 사	강 성 조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		당 연 직		
	이 사	김 성 기	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			당 연 직		
	이 사	오 준 혁	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	2024.8.30. ~ 2025.8.29.		
	이 사	이 태 산	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			2024.8.30. ~ 2025.8.29.		
	이 사	조 병 래	경기도 자치행정국장			2024.8.30. ~ 2025.8.29.		
	이 사	신 동 헌	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			2024.8.30. ~ 2025.8.29.		
	이 사	김 성 수	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			2025.3.13. ~ 2026.3.12.		
	이 사	강 범 석	인천광역시 서구청장			2025.3.13. ~ 2026.3.12.		
	이 사	김 성	전라남도 장흥군수			2025.3.13. ~ 2026.3.12.		
	이 사	박 관 규	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			2023.8.30. ~ 2025.8.29.		
	감 사	김 정 선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		당 연 직		
	감 사	김 경 태	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	2024.2.28. ~ 2026.2.27.		
	주요기능	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	
설립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139,826 (‘11~’25 까지 지자체가 출자·출연한 금액)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22	2023	2024	재무현황 (백만원) ‘24.12.31기준	자산	27,444	
	예산액	18,069	17,379	19,269		부채	1,875	
	지자체 지원액	13,797	12,383	13,078		자본	25,568	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24.12.31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	
	18,063			16,309		1,820		

### 3)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	구분	출자	해당없음
주관부서	세정과		출연	39,231천원(시비)

#### ① 목적 및 필요성
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-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

#### ② 출연개요

- 연구원 운영 예산('24년: 19,269백만원) 중 13,078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
-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

#### ③ 산출기초

- 출연액 : 39,231천원
- 전전년도 보통세의 1.0/10,000를 출연
  -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#### 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천원)

구분	합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
출연금	270,529	58,177	45,986	49,767	59,447	57,152

#### ④ 기대효과

-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#### ⑤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, 지방재정·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출연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의거하여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한국지방세연구원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 근거해 설립된 전국 단위 연구기관으로,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지방세제 연구, 제도 개선,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.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정 의무 출연금에 해당하며, 지방세 제도 연구, 제도 개선 논리 마련,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본 출연안은 사업 내용, 근거 및 필요성, 예산 및 산출의 근거를 모두 기재하여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집행기관에서는 연구원에 단순히 출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세정 현안과 과세 실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적극 전달하여 맞춤형 연구과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.